

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세종대왕유적관리소]

2016. 7.

문 화 재 청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기관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주의)	3
2.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전시용 유물 복제 제작에 관한 사항(통보) ·	6
3.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적용에 관한 사항(시정)	8
4. 정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관리부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주의) ·	9
5. 위탁사업에 대한 소속공무원 자문료 지급에 관한 사항(시정) ···	10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사적 제195호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조선 4대 세종대왕, 소헌왕후의 합장릉과 제17대 효종대왕, 인선왕후의 쌍릉을 보존하고 세종대왕의 유덕과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곳으로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며 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세종대왕유적관리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직원 현황은 총 43명(정규직 21명, 비정규직 22명)이고, 2016년 예산은 6,560백만원으로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내부 청렴도 취약 5개 분야(예산집행, 업무지시 등)를 포함한 회계감사와 더불어 주요 시설물 및 국유재산 관리, 물품 및 유물관리 실태, 기념관 건립, 비정규 직원 관리·복지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6. 4.4., 4.11~15.까지 총 5일간 감사인력 3명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6. 7. 8.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주 의 요 구

제 목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내 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제1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일공사(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 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①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가. 수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공사 자재 제공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2013년 6월 산림지역 내 수해 복구 공사(방부목을 이용한 배수로 설치 100m)를 시행하며 해당 공사를 ◆◆◆종합건설(주)(‘13.6.23. ~’13.7.12. /21,907,000원)와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방부목 및 잡석)는 세종대왕유적관리소가 ■■■■■이 등 2개사로부터 직접 구입(20,972,160원)하여 지급하였다.

해당 공사의 총 공사비는 42,879,160원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함이 타당하였으나,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방부목 및 잡석 등 필요자재를 직접 구매 공급하는 것으로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을 2천만 원 이하로 조정된 후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유사 과업의 분리발주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2014년 3~4월 기간 중 영·녕릉 간 주차장 연결로 역사경관림 일원의 고사목 등 232주를 제거하는 ‘역사경관림 솔숲 생육환경개선 사업(‘14.3.28.~‘14.4.12./☆☆☆건설/15,360,000원)’과 ‘왕의 숲 어린이동산 가꾸기 부산물처리(‘14.3.29.~‘14.4.12./★★기업/8,250,000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상기 2건의 사업은 동일시기에 시행되었고, 사업 현장 또한 인근이며 동일 중장비(굴삭기 0.3w)가 사용된 사업으로, 일괄하여 발주(총 23,610,000원)함이 타당하였으나, 각각 분리 발주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설계변경 계약 부적절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영릉 석물 보존처리 공사(‘14.10.30.~‘14.12.26./주식회사 잡스/당초 43,860,000원, 추후 62,850,060원으로 계약변경)를 시행하며 당초 영릉 석물 암각의 표면세척 및 암석강화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저온 등으로 인해 암석강화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정자각 기단 등에 대한 습식 세척을 과업에 추가하여 총 18,990,060원을 증액한 후 계약 변경 하였다.

주요 공종별	과업량 및 소요 금액(원)				변경금액(원)
	변경 전		변경 후(정자각 추가)		
습 식 세 척	43.99m ²	17,781,505	94.61m ²	38,241,735	20,460,230
암석강화처리	38.25m ²	8,603,228	-	-	-8,603,228
합 계	82.24m ²	26,384,733	94.61m ²	38,241,735	11,857,002

그러나, ①당초 사업 대상이 능 주변 석물에 대한 보존처리였고, 정자각 기단을 능 주변 석물로 보기 어려움 ②당시 정자각 기단에 대한 보존처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세척에 대한 시급성을 확인할 수 없음 ③ 추가 과업에 대한 소요 금액이 1인의 견적으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범위(추정가격 2천만 원)를 초과함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할 때 정자각 기단의 세척은 기존 계약의 변경이 아닌 별도의 계획을 수립·발주 후 시행함이 타당하였다.

조치할 사항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단일 공사인 경우 분할함 없이 단일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시고 사업시기 및 과업이 유사한 사업일 경우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련자]

소 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과 장 ♡ ♡ ♡	'14.7.1.~현재	검사공무원 재무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과 장 ◎ ◎ ◎	'12.2.10.~'14.6.30.	검사공무원 재무관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	◆◆주사보 ● ● ●	'14.4.11.~현재	감독공무원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주사 ● ● ●	'12.10.1.~현재	감독공무원	"
"	◆◆서기 ▲ ▲ ▲	'14.2.4.~현재	재무관보조	"
"	◆◆서기 目 目 目	'12.12.21.~'14.2.4.	재무관보조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세종대왕유적관리소

통 보

제 목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전시용 유물 복제 제작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내 용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전시용 유물 복제 제작'에 대해 (주) ■■■■■연구소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의 방식'으로 용역계약 (계약기간 '15.7.27.~'16.1.23./계약금액 169,189,330원)을 체결하여 '15.12.30. '경상도 지리지' 등 20점의 유물 복제가 완료되었다.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4조(명시이월비)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역사전시관 전시용 유물 복제 제작'와 관련된 예산의 이월에 대해 국회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았으면 해당 계약 시 계약체결 및 지출원인행위를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하여야 함에도, 다음 회계 연도인 2016.1.23.까지로 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 체결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였다.

※ 당해 연도인 2015.12.30. 계약이 완료되어, 실제 예산의 이월은 없었음.

또한 용역결과물인 '경상도지리지' 영인본 등 20점은 2015.12.30. 정상적으로 납품되었으나, 과업지시서에 ①유물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②인쇄기술 및 복제에 사용되는 잉크의 수명에 관한 공인인증 ③복제품임을 표기 ④복제과정에 얻어진 사진자료 및 일체의 성과물은 과업완료 후 발주처에 일괄 제출 ⑤과업수행 후 모든 관련 자료는 종류별로 일괄 정리한 후 목차를 작성하여 보고서로 CD와 함께 5부를 제출 등을 명시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로부터 유물조사 결과보고서, 잉크 수명에 관한 공인인증, 보고서 등을 제출받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향후 용역 사업 추진 시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시 정 요 구

제 목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적용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내 용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9조(악성코드, 바이러스 방지대책) 제①항 제7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메신저, 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인터넷 연동구간의 침입차단시스템에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 설정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는 상기 규정을 미숙지한 상태에서 외부 기관과 각종 업무자료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사무실 인터넷 망 PC에 파일공유 프로그램(웹하드, LG 유플러스)을 2013. 1월 ~ 2016. 4월까지 운용 중에 있으며 이 비용으로 총 551,850원(년 169,800원)을 지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파일공유 프로그램(웹하드)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주 의 요 구

제 목 정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관리부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제①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하자검사) 제④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 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기타 참고사항)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는 '산림지역 내 수해복구 공사' 등 31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에 대해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연 1회에 한하여 만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자체종합감사일(2016.4.15.)까지 하자보수관리부를 기록·유지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시고, 하자보수관리부를 기록·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시 정 요 구

제 목 위탁사업에 대한 소속공무원 자문료 지급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내 용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질문모음(page 390)에 따르면 위탁 사업은 업무를 수탁업체에 위탁했을 뿐 그 위탁사업의 수행주체는 국가이므로, 수행주체인 국가의 공무원에게 위탁사업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소속된 중앙관서(본부 및 소속기관 전체를 포괄)의 사무와 관련해 원고를 작성하거나 업무에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는 2015년에 (주)○○○○○○연구소와 ‘세종대왕 역사전시관 전시용 유물 복제 제작(169,189천 원/ 2015.7.27. 계약)’을 시행하면서 복제 제작 자문단을 구성(2015.8.19.) 하였고 자문단으로는 외부 위원 3명과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선임하였으며 발주기관(세종대왕유적관리소)과 무관하게 (주)○○○○○○연구소가 문화재청 소속 자문단 2명에게 자문을 실시하면서 본 용역 건에 대한 자문료(1,160,900원)를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관련자(2명)에게 위탁사업비에서 지급된 자문료 1,160,90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